제2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www.arko.or.kr)

디지털정보로서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가치 공론장구축 필요성과 정책적 실제: 구글(Google) 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필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Ⅰ. 서론 ····· 3
1. 문제제기: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구조 변동과 중개자의 등장 ····· 3
2. 연구대상 및 방법론: 구글 북 프로젝트 관련 법적 소송과 관련 논쟁 ····· 6

Ⅱ. 구글 북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과 그 한계 ····· 9

Ⅲ. 구글 북 프로젝트에 관한 쟁점과 그 함의 ····· 14
1. 독점가능성과 옵트아웃 정책 그리고 디지털 문화콘텐츠 가치 산정 ····· 16
2. 공공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과정에 요구되는 투명성 ····· 20
3. 공공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와 지속가능성 문제 ····· 22
4. 민간 주도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과정: 시장 원리와 공공 가치의 충돌 ····· 25

Ⅳ. 결론: 디지털문화콘텐츠 가치산정에 대한 공론장의 필요성 ····· 28

참 고 문 헌 ····· 31

그림 목차

<그림 1> 신 문화향유경험 흐름에서 단절된 박물관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Ⅰ. 서론

1. 문제제기: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구조 변동과 중개자의 등장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화/예술 유산과 창작물들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문화예술분야에 가져다준 변화와 혁신의 씨앗들이 급속도로 뿌리내리는 만큼,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국내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시작된 mp3 음악 파일 공유와 이를 이은 5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폭풍 같은 음악 산업 구조의 디지털/온라인 전이 및 재편은, 문화예술 향유 구조에 대한 디지털 변혁 물결이 기존 문화예술 정책의 대응 수준을 뛰어넘은 좋은 예이다. 그 누구도 LP, Tape 및 CD로 이어지는 기존의 실물 음악 매체가 그렇게 빨리 디지털 파일로 대체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실물 음악 매체들이 점하고 있던 '문화/사회/산업적 위치'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음악 산업은 기존 실물 음악 매체들을 기반으로 하던 음악 산업을 대신하는 대신 아예 새로운 음악 문화 향유 산업을 창출해냈다. 지금 음악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 및 스트리밍 시장의 이익 배분 구조만을 고려해보더라도, 디지털 온라인 음악 산업이 사실상 기존 실물 음악 매체 기반의 음악 산업과는 본질적으로 그 음악 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양상이 판이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인터넷의 대중화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문화예술 향유가 본격화하면서, 디지털과 문화예술전반이 맺어갈 관계성에 대한 정밀하고 본격적인 성찰이 필요해지고 있다. 미술 분야를 예로 들자면, 패리(Parry, 2007)는 미술작품에 대한 디지털화로 인해 '미술전시'의 개념이 붕괴하고 물리적 미술관이 사라질 위협에 처했다고 경고한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에 관람객이 경험하는 미술작품관람이라는 것은 물리적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한 고정적/일방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제껏 없던 디지털데이터라는 분절된 형태의 '접속'을 핵심으로 하는 반복되는 연결(Link)적 경험이다. 즉 미술관 벽을 넘어 존재할 수 있는 미술관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껏 미술관이라는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미술작품 관람행위는 보다 파편적이고 분절된 '접속' 중심의 경험으로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람객이 미술관에 방문하는 대신 '접속'만으로 미술관의 경험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미래엔 지금과 같은 미술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 '접속' 중심의 이용자들의 분절적 문화기관 경험에 대해 정필주(2010)는 기존의 문화기관을 그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문화향유 구조 자체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주(2010)는 디지털기술변화와 함께 등장한 사람들의 변화하는 문화향유양태는 소비를 통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슈머(prosumer)' 혹은 '미니크리에이터(mini-creator)'로 대표된다면서, 박물관/미술관이 변화하는 문화향유양태를 포착하고 이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들 문화기관들은 문화지식전달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문화예술 및 지식유산의 보존과 보급이라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필주(2010)가 주목하는 문화향유양태 변화란, 최근 음악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서도 나타나듯 문화예술 작품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정보통신 관련 중개업체들이 기존의 문화생산자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된다. 그는 정작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을 연구, 유지시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지식정보의 전달흐름에 있어서 소비자와 유리되고, 오히려 이러한 지식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았던 중개자들이 문화지식 전달자를 자처하며 상업적 이득은 물론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의 다양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이러한 문화예술 경험의 흐름 혹은 문화예술 향유 순환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개자가 기존의 문화예술 경험의 중간에서 그 흐름을 분절화 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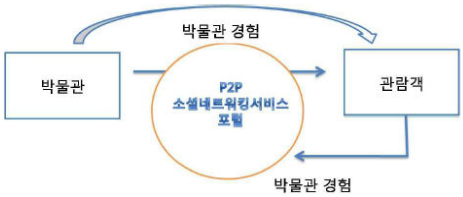

<그림 1> 신 문화향유경험 흐름에서 단절된 박물관
출처: 정필주(2010: 76)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문화예술 정책 논의에서 공공 문화예술 기관들과 소비자 사이에 새로이 등장한 중개자의 모습과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개자는 문화예술품과 일반대중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그들은 공공 문화예술 향유를 촉진시키고 그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공공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기관들과 일반 대중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공공기관이 해오던 역할을 대신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공공성은 실종되고 민간 부문의 논리가 공공 문화예술 향유과정을 지배하는가?

현재 예산축소로 인해 많은 공공 문화예술 기관들은 사기업과의 협력을 모색 중이지만, 그 협력의 성격을 '파트너쉽'으로만 지칭하는 것은 매우 막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함을 걷어내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화란 무엇인지 친절히 알려줄 수 있는 '경험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음악 시장에서의 디지털화 경험은 급속한 디지털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 아니면 인터넷 기술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만을 제시하는 디지털 이상론의 부침들만을 목격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이러한 중개자들의 등장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 경험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온라인 음악 산업처럼 현상이 정책을 주도한 사례보다는 기존 제도와 정책적 현실이 디지털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그 접점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화 논의 사례를 개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닌 인터넷 업체 구글(Google)[1]이 최근

1) 구글(Google Inc.)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인터넷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및 광고기술 등 인터넷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1998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다.
검색엔진 외에도 여러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메일, 오피스 슈트(Office Suite) 같은 온라인 생산성 프로그램,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물론 사진정리 및 편집, 인스턴트 메세징 등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개발과 그 확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모바일/웹 브라우저 크롬을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및 애플(Apple)과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백만 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 소셜 미디어인 블로거(Blogger) 등을 소유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Google#Financing_and_initial_public_offering, 2012년 8월 25일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문화예술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은 국내 문화예술 유산 디지털화 정책 개발 지점에서 현실감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구글의 미술작품 디지털화 사업인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2]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도서를 스캔하여 웹상에서 서비스하는 사업[3]을 추진 중이며 몇 해 전 국내 저자 및 출판관계자들에게 구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4] 구글이 지난 10여 년간 보여 온 인류의 지식과 문화전반을 디지털화하려는 노력과 그 과정은 단지 단일 기업의 비즈니스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으며, 이미 국내의 문화예술 관련 문화기관들 나아가 국가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그 정보를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는 것"을 자체 목표로 삼고 있다고도 알려져 유명해지기도 한 구글은 검색엔진서비스사업 외에도 이메일, 오피스 소프트웨어, 소셜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있다. 광고수익이 총수익의 대부분(약 96%)을 차지하며, 연 수익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79억 달러(약 43조원)이다.[5] 구글의 인터넷 시장지배력은 다음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어떤 회사도,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이런 분야에서 경쟁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글을 규제할 기관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이메일이나 응용프로그램, 블로그, 이미지 호스팅, 건강 기록, 휴대폰 플랫폼 등 이 모든 분야에서 구글은 다른 주요 회사들과는 다르다. 온라인 비디오, 절판된 책 검색, 온라인 광고, 그리고 웹 검색 등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은 장기적으로 구글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바이디야나단(Vaidhyanathan), 2012: 40).

이미 인터넷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구글은 최근 10여 년간 문화예술 작품을 일괄적으로 스캔하는 대량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 7년 동안은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법학계와 IT 업계 그리고 사회학계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이 글은 구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야기한 소송과정(구글 북 프로젝

---

2) 구글이 세계 각국의 유수의 미술관들과 협약을 맺고 소장 자료의 고화질 디지털 스캔 자료를 구글 아트 프로젝트 홈페이지인 www.googleartproject.com을 통해 공개하는 미술 작품 디지털화 프로젝트이다. 2011년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17개 미술관과 박물관이 약 1,000여 점의 미술 작품을 제공하며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151개 미물관과 박물관에서 3만 2,000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였다.
(뉴욕 타임즈 4월 12일, http://www.nytimes.com/2012/04/12/arts/design/google-art-projects-expanded-offerings.htm, 한국경제신문 2012년 4월 4일)

3) 현재 구글 북스(Google Books)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본 사업(books.google.com에서 도서검색과 제한적인 원문열람이 가능하다)은 전세계 도서관과 제휴를 맺어 대량으로 도서관 소장 책들을 스캔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약 2,000만권 의 도서를 스캔했다.

4) 후술하겠지만, 구글의 도서스캔서비스는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책을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구글은 저작권침해 소송이 걸리게 되었고, 이후 소송 원고와 피고인 구글은 2008년 합의하고 화해안을 도출하였는데, 화해안의 내용은 '옵트아웃(opt-out)'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옵트아웃은 저자가 직접 구글 측에 "나는 이 화해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야만 해당 화해안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책이다. 국내 저자들이 화해안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구글 측에 의견을 밝혀야 하는 기한은 2009년 9월 4일이었는데, 이 내용이 2009년 국내에서 한 신문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다음은 관련 신문 보도 내용이다.

"구글 도서 검색(Google Book Search) 저작권 소송 합의안을 감독하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은 오늘 본 소송의 탈퇴 기한을 2009년 5월 5일에서 2009년 9월 4일("탈퇴 연장 기한")로 연기하였다. 탈퇴 연장 기한은 집단소송 구성원들이 합의 집단소송에 남아 합의안의 수익자가 될지, 아니면 합의에 반대하여 합의 소송에서 탈퇴할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최종 기한이다."
('구글 도서 검색 저작권 합의에 관한 중요 기한 연장', 연합뉴스, 2009년 4월 29일)

5) inverstor.google.co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트 관련 저작권 소송)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구조의 변동의 중심에 서 있는 구글이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기업 주도의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해 구글이라는 중개자가 주창하고 있는 사업 논리,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여러 논쟁 지점들을 검토하여 공공 문화예술 유산 디지털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원칙과 그 기준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구글을 비롯한 디지털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예술 유산 중개자들이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예술 향유 순환 구조 내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유산이 담보하던 문화/사회적 가치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론: 구글 북 프로젝트 관련 법적 소송과 관련 논쟁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의 방법론적 도구이자 문화예술 유산 디지털화의 중요한 사례로 지목될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구글은 2004년 구글 프린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Print Library Project)를 발표하며 미국의 총 4개의 유명 대학도서관 및 1개의 공공도서관[6]의 소장 컬렉션을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구글은 계속해서 협력 도서관 및 출판사의 수를 늘려가며 스캔대상 도서의 범위를 늘려갔다. 2005년 구글은 본 사업의 이름을 구글 북 서치(Google Book Search)로 변경하며 2개의 사업을 발족했는데 하나는 구글 북 파트너 프로그램(Google Book Partner Program)으로 출판업자 및 저자들과 협약을 맺고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계획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구글 북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 Library Project)로 도서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도서를 스캔하는 사업이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제부터 구글의 도서 디지털 사업을 '구글 북 프로젝트'로 통칭하고자 한다.[7]

그런데 구글이 처음 북 프로젝트를 발표할 까지만 해도 구글의 문화예술 디지털화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해당 프로젝트의 어마어마한 규모(2012년 기준으로 북 프로젝트의 경우 2,000만 권 이상, 아트 프로젝트의 경우 3만 2,000 여 점)와 구글의 공익적 활동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및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파트너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글의 행보는 '지식의 확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즉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 발표된 구글 북 프로젝트의 내용은 도서 전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검색창에 검색된 도서의 일부 내용을 스니펫(Snippet, 스캔된 디지털 도서 정보로 해당 도서나 특정 자료의 일부 페이지 혹은 문장 단위의 발췌문을 말한다.)이라는 형태로 보여주는 정도였다.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공용저작물은 전문을 제공한다는 것이 구글의 계획이었다. 게다가 이 모든 서비스는 구글닷컴(google.com)에 회원가입을 한다는 조건하에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8] 제공하기로 되어있었다.

---

6) 여기에 해당하는 4개의 대학도서관으로는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rvard (Harvard University Library), Stanford (Green Library), Oxford (Bodleian Library)가 있고, 한 개의 공립도서관은 the New York Public Library 이다.

7) 오해를 피하고자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도서관 및 출판사와 협정을 맺고 책을 스캔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의 초점이 '책'이라는 형태의 문화적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구글의 북 사업은 대체로 책을 스캔하여 웹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책'안에는 고문서, 의학해부도, 미술 및 사진예술 작품집, 항공사진, 설계도, 지도 등 차마 그 종류를 다 분류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콘텐츠들이 포함된다. 나아가 기존에 해당 문화예술 유산이 '책'이나 '그림' 등의 특정 형태에 고정되었다 할지라도, 구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예: 구글 아트 프로젝트 등)는 이들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 형태를 비트(bit) 정보라는 단일 형태소로 바꾸어 저장하고 분석하며 유통한다.

8)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으로, 구글 수입의 대부분이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광고를 접하게 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통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관련 소득을 올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해인 2005년, 구글은 두 건의 집단소송들에 휘말리게 되는데, 하나는 미국의 작가길드(Authors Guild)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제기한 소송[9]이고 다른 하나는 5개의 대형출판사와 미국출판협회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10]이었다. 훗날 이 두 소송은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병합 처리하여 단일 사안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 두 개의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우선 본 소송이 개별소송이 아닌 집단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어떤 식으로든 등록되어 있던 저자들은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었고, 베른 협약[11] 등의 국제협약 조항 등에 의해 미국 저자가 아니더라도 책을 한 권이라도 출판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누구나 이 집단소송의 소송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12]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해 구글이 국내 신문광고를 통해 화해안의 조건을 공고하는 등의 여파가 일기도 했다.

대량의 실물 도서들을 일개 기업이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디지털화한다는 것의 사회적 의미가 미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글의 도서 디지털화 계획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다 많은 대중이 어디서나 각종 지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 공익적 목적의 실현 혹은 그를 통한 새로운 북 비즈니스 시장의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자와 출판사의 지적 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Moral Right)을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적 시각이었다. 게다가 구글은 그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 및 기술 파급력에 있어 세계의 정점에 올라있는 인터넷 업체였으며, 그 소송을 다루는 법원 또한 세계 최대 도서시장인 미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판결이 향후 관련 문화/산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도 세계적인 관심이 촉발된 배경이었다.

3년 뒤인 2008년, 원고단과 피고 입장인 구글은 화해안(Settlement Agreement)[13]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지만 합의안의 내용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자 양 측은 2009년 다시 수정된 화해안(Amended Settlement Agreement)을 발표하였다. 미국법상 집단소송의 화해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법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형태의 인터넷 광고 업체라는 점은 이러한 구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실제로 '무료'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9) Authors Guild v. Google, (Sept. 20 2005)

10) McGraw Hill 외 v. Google, (Oct. 19 2005)

11) Berene Convention, 문학 및 예술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제 지적재산권 협의회(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웹사이트 www.wipo.int를 참조

12) 한국저자도 구글 북 프로젝트의 화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화해대상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김기태(2009)의 글에 설명되어 있다.

"(화해대상) 집단은 2009년1월 5일 현재 '화해'에서 인정하는 하나 이상의 도서나 삽입물에 대해 '미국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에 살지 않는 경우에도 1.도서가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 2. 도서가 미국에서 발행되지는 않았어도 저작자의 국가가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미국과 저작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저작자의 국가가 해당 도서의 발행 당시 미국과 저작권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어 화해가 적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고 보면, 결국 국내 저작물(도서)들도 이번 구글 저작권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김기태, 2009: 9)

다만 원고들과 구글이 함께 합의하여 美 법원에 제출한 수정 화해안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미국 및 영국 등의 영미권 지역으로 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상당부분 줄이긴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화해안의 통과 여부 및 소송 결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수정 화해안의 '한정 범위'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3) 본 합의건을 소개하는 한국어판 웹사이트가 있다. "Google 도서검색 저작권 본건화해" www.googlebooksettlement.com 에서는 수정된 본건 화해 합의서, 통지문서, 최근 업데이트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이트에서 구글은 이 사이트의 운영 목적을 "구글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서 스캐닝, 전자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간단한 발췌문 표시를 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도서 및 삽입물의 저자, 발행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제안된 화해 내용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아울러 구글은 이러한 저작권위반에 대해 부인하는 바이라는 주장 또한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 2011년 3월 합의안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08년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도출한 화해안은 그 내용의 대담성과 파격성 때문에 더 큰 화제를 불러 모았고 이윽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본 사안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화해안을 통해 '스캔한 도서내용 중 저작자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보호를 받는 작품의 원문공개 및 상업적 판매 서비스'를 제안한 것이 포함된다. 즉 당초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구글의 북 프로젝트가 사실상 구글 및 일부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상업적 서비스로 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옵트아웃(opt-out)'이라는 디지털화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저작권개념을 뒤엎는 것에 가까웠기에 사회적 논란은 더 커졌다. 옵트아웃이란 작가가 직접 구글측에 "나는 이 화해안 및 구글 북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를 통보해야만 구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자신의 작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작가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자동으로 화해안 및 물론 구글의 북 프로젝트의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대로 옵트인(opt-in)은 구글이 저자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그 참여의사를 물어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말하면 비로소 그들 작품이 구글 북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방식을 말한다. 전세계의 수많은 저자들이 과연 소송 및 화해안을 주도한 원고단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인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화해안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약 500 건의 성명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그중 대다수는 본 화해안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6,800명의 저자들이 옵트아웃을 선언했다(Cavanaugh 외, 2009: 11).

이 글은 본 구글 북 프로젝트에 관련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적 분쟁 중 특히 2008년 화해안이 도출되고 2009년 수정 화해안이 도출되면서 반대여론이 사회적으로 폭발한 시기에 법원에 접수되었던 이의제기 성명서들 및 관련 성명서들과 이를 토대로 발전해온 학계의 논의들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삼는 구글 북 프로젝트 법적 분쟁을 통해 해당 담론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양상들을 끌어내어 이를 문화예술 정책적 경험의 차원에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본 연구는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리 관계의 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그 내용과 절차가 공개되고 관련된 여러 개인 혹은 집단이 이에 대해 논의를 펼쳐가는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구글 북 프로젝트를 바라보고자 했다. 레이만(Reyman)은 법적 분쟁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법적 분쟁은 양자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장소이다. 이 장소는 또한 우리 문화에서 가치시스템이 경쟁하는 결투의 장소이기도 하다."(Reyman, 2010)라고 말하였다. 레이만의 언급처럼 구글 북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를 단순히 추상화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만 파악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과 사회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언술들 및 그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담론의 기능적 역할들까지도 파악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문화예술 콘텐츠 디지털화 변동 양상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을 특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글 북 프로젝트 그동안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2장에서 정리하였다. 그 후 3장에서는 구글 북 프로젝트 화해안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이의제기 성명서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 영역을 국제적 관점으로 확장하려 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구글 북 프로젝트 관련 논쟁 및 디지털화 경험들은 미래 한국의 디지털 문화예술향유 변동 양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측된 디지털 문화향유 구조 변동 속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화기관들이 수행해오던 문화예술 유산의 보존과 그 가치의 보급이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요건을 4장에서 도출해내고자 한다.

Ⅱ. 구글 북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과 그 한계

구글 북 프로젝트는 법, 산업 및 도서관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해석되고 있다.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법리적 논의의 중심은 구글 북 프로젝트가 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도서를 대량으로 스캔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공공이용(fair use)'을 주장하며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일부 저작권자들이 입을 손실보다 공익의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위 고아저작물(Orphan Works, 저작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화/예술 콘텐츠들, 구글 북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들의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된다)에 대한 스캔 작업 또한 구글 북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에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아저작물들을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허용될 수 있는 공공이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14] 이에 더해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경제/사회적 효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구글의 북 프로젝트로 인해 전자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므로 기존 저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폐쇄적 저작권은 변화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즉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동시에 능동적으로 문화를 창조한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 소비자들의 문화향유 양태가 말해주듯, 폐쇄적 저작권법은 곧 창작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창조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목표라면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한을 강조하는 기존의 저작권법 적용은 규제 남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도서관적 접근들은 대체로 도서의 전자화와 이를 통한 보급의 확대에 그 가치를 두며 구글 북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입장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글 북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에는 '공공 문화예술' 혹은 '국가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구글 북 프로젝트의 거시적 담론화가 생략되거나 간과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공 문화예술 유산의 보존과 보급 및 그 가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구글 북 프로젝트, 나아가 구글 문화유산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이 갖는 의미와 그 영향 그리고 쟁점들에 대한 고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시도된 연구의 수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디지털 시대 문화예술 향유 순환 구조 내에서 구글의 중개자로서의 측면과 급격한 문화향유 변동 과정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가치산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본 구글 북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이러한 국내 시각 정리는 향후

14) “구글 북스” 홈페이지는 http://books.google.com/intl/ko/googlebooks/about.html 이다. 이 페이지에서 구글은 구글 북 프로젝트가 지식의 확산에 기여하며, 특히 책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홍보,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한국어로도 서비스하며 ‘구글 도서검색 정보 소개’, ‘역사’,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오해와 진실' 코너는 구글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비판지점을 스스로 변호하는 코너인데, 여기에서 구글에 가해지는 가장 빈번한 질문인 "저작권 보호 대상 책을 허가 없이 스캔하는 것은 불법이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구글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답하고 있다. "도서관 책이 공개도서(저작권 없음)일 경우 전체 내용이 표시된다. 책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경우, 사용자는 기본적인 배경정보(책 제목, 저자 이름 등), 최대 2-3개의 발췌문, 소장 도서관이나 구입 가능한 곳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다. 발행인이나 저자가 책의 디지털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구글은 그 도서를 제외시킨다"고 되어 있다.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 답변만으로 구글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짧은 답변만으로도 구글 북 프로젝트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함의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차원의 디지털문화예술콘텐츠의 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해나가는 데 있어 바탕이 되어야 하는 현재 시점의 이해와 인식 수준을 점검한다는 의미도 있다.

먼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크게 법학적 접근과 도서관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보았다. 법학적 접근에 해당하는 연구로 안효질, 송선미(2010), 김병일(2008), 최진원(2009), 이영록(2009), 육소영(2011), 한지영(2007), 박명규(2008), 박은주(2008), 이규호(2010), 이대희(2010) 등이 있고 도서관적 접근로 분류될 수 있을 연구는 이향국(2005), 김성원(2011), 류병운(2011), 유수현(2010), 성윤아(2009)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김윤명(2010), 김기태(2009), 김성원(2011) 등이 해당했다.

공공 문화예술 콘텐츠의 유통이라는 틀 속에서 중개자로서의 구글이 어떤 모습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관해 살펴본 결과, 구글 북 프로젝트를 다룬 위의 국내 연구결과들로부터 몇 가지 특징을 꼽아 볼 수 있었다. 첫째, 구글의 북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구글의 북 프로젝트를 보편적이면서도 글로벌한 흐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구글 북 프로젝트의 목표와 그 영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언어로 쓰여진 책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비전에 동참하는 저작권자, 출판사, 그리고 도서관의 숫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 중략 …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가 되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급속도로 다원화,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있는 도서관과 출판사들도 구글 도서 검색에 적극 참여한다면 한국 출판물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중략 … 일부에서는 구글의 정보 독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미시간 대학교를 비롯한 구글 도서검색 참여기관은 학술 정보의 공유와 보존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글 도서검색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성윤아, 2009: 98).

위의 인용문은 구글의 독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통합되는 세상을 그리면서 구글의 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행복한 미래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을 통한 미래에 대한 무비판적인 낭만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구글이 전 세계의 지식을 공유하게 해줄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위 글에서 구글은 전 세계의 지식을 유통시켜줄 최고의 선을 실현할 최고의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청사진에서 구글은 미국이라는 국적도, 사기업이라는 조직적 속성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무색무취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글로벌한 흐름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낭만적 접근의 다른 예로 이영록(2009)와 이대희(2010)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대희(2010)은 구글 북 프로젝트를 '사이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 칭하며, 이를 본받아 한국판 '사이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실현해야 하며 전자책출판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록(2009) 역시 "구글의 프로젝트는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꿈이 디지털 환경에서 실현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란 표현은 전 세계 지식을 한 데에 모을 수 있다는 구글 북 프로젝트의 긍정적 측면을 사람들이 부각시키고자 할 때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즉 구글 북 프로젝트를 일종의 문화 기관, 즉 디지털상에 구축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이 추진하는 구글 북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도서관’으로의 공익적 측면이 아닌 ‘사기업 서비스’로서의 시장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구글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이버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독점적으로) 존재하게 된 미래에 과연 한국형 사이버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정책적 대응 방안 또한 전혀 제시되지 않는 점 또한 매우 아쉬운 점이다. 나아가, “구글의 ‘사이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구축된 미래가 과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의 생산, 보존 및 보급에 과연 유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발견되는 경향은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을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할 지상과제로 인식하면서 그 실현의 주체에 대해서는 맹목적이고도 무비판적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구글의 북 프로젝트는 적절한 검증과정 없이 바로 전자도서관, 혹은 디지털도서관과 동일시된다. 물론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은 실현될 경우 사회적 혜택을 가져와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 실현 주체가 누가 되든 개의치 않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도서관을 실현하려 추진하는 주체가 기존의 문화예술의 생산 및 유지, 발전과는 무관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구글 북사업의 저작권적 측면 및 공정사용법리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도서관적 법률상황을 점검한 김윤명(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화는 민간 기업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물론 국가 또는 민간 기업이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김윤명, 2010: 135).

위의 언급은 문화예술작품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든 디지털화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하든 민간기업이 하든 디지털화된 결과물이 중요할 뿐이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진원(2009)의 연구에 나타난 아래 인용구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디지털화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 도서의 디지털화와 공중에의 서비스는 그 편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도서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검색은 주체가 누가 되든지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최진원, 2009: 14).

이렇게 '누가 디지털화를 하든 특정 콘텐츠가 디지털화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자세를 '콘텐츠 중심주의'라고 이름 붙여본다면, 이러한 콘텐츠 중심주의는 문화예술콘텐츠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를 갖는다. 문화예술품을 디지털화하여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마른 자에게 어디서든 물을 마실 수 있게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콘텐츠 중심주의는 ‘수원(水源)의 위치나 그 담수량과 관계없이 땅을 파 물을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세가 비슷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물이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면, 물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수원(水源)의 수질이 손상되어도 상관없는가? 그 물이 수년 후 곧 말라버려도 상관없을까? 콘텐츠 보급만을 중시하는 콘텐츠 중심주의의 문제는 그 콘텐츠 본연의 가치 유지나 향후 해당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주체의 자격과 그 의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인터넷 집단 라이선싱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현행 저작권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류병운(2011)의 연구 역시 글로벌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상정하며 구글 북 프로젝트를 글로벌도서관으로 지목한다.

> "(구글 북 프로젝트라는) 글로벌 전자도서관이 명실상부하게 구축된다면 … 중략 …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 중략 … 지식기반사회의 확실한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 중략 … 유료이용자의 증가는 새로운 수입 창출로 이어져 저작권자들과 출판사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류병운, 2011: 774)

그러나 구글의 북 프로젝트를 글로벌 '도서관'이라 칭하는 데 있어, 기존의 도서관(및 문화예술 기관)이 담보해 오던 사회적 역할을 구글 북 프로젝트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게다가 수입 창출을 주장하는 대목 또한, 마치 불법 mp3나 거의 무료에 가까운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CD 등의 음반 판매를 촉진한다는 디지털/온라인 음악 산업 초기의 실패한 전망들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소규모 유료 이용자의 증가가 대규모의 불법/무료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손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 바이디야나단(Siva Vaidhyanathan) 혹은 사뮤엘슨(Pamela Samuelson)과 같이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은 구글의 북 프로젝트를 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뮤엘슨은 '구글 북 프로젝트는 도서관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기고문[15]을 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지점은 구글 북 프로젝트가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합당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서관 나아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기관들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과 경험을 축적하여 특정 문화예술 형식에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 혹은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문화예술 콘텐츠의 생산, 보존, 보급의 역할의 문화·사회적 중추로서 이해되어 왔다. 나아가 이들 문화 기관들은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및 지식 콘텐츠 주권을 대행해 왔다. 즉 '누가 디지털화해도 상관없다'식의 디지털화 주체에 대한 무관심은 새로이 생겨날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주권을 사실상 그 시작부터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혹 어떤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고 그 주체가 누구이든 결국 디지털화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주권 그리고 그 이익은 당연히 해당 국가 혹은 문화권 공동체에 속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가수, 작곡가, 연주가 등 음악가들은 디지털 음악 콘텐츠가 사실상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통되는 것을 경험해왔고, 나아가 그 유통 수익 분배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16]. 마찬가지로 구글 북 프로젝트나 아트 프로젝트에서도 해당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디지털화'는 그 작품의 창작자의 의도보다는 그 작품의 보유 기관과 구글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중시한다. 그리고 구글 주도의 디지털 문화향유 구조 속에서 중개자로서의 구글이 취할 이익은 새롭게 창출되어 문화권 공동체에 귀속되기 보다는 디지털화 대상 문화예술 유산의 잠재적 디지털 가치를 '저평가' 함으로

15) Pamela Samuelson, Google Books is not a Library', Huffpost media(October 13, 2009), 2009.

16) 디지털 음원시장은 2007년 규모가 3,700억으로 음반시장의 5배로 커졌지만 수익의 절반이상을 이동통신사가 가져감으로써 정작 음원 생산자나 실연자인 가수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음원 유통업계 '배 불러~' 가수·제작자 '왜 불러~', 경향신문, 2008년 1월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써 그 평가차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국내 연구들 또한 구글 북 프로젝트에 제기된 각종 비판과 관련 부작용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점에 대한 우려, 집단소송조건 불충족, 프라이버시침해문재,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의 불합치성, 스캔된 자료의 낮은 품질, 미국 혹은 영어권 중심의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우려, 메타데이터의 오류들 등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구글 북 프로젝트가 야기하고 있는 비판들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인식들이 구글 북 프로젝트로 인한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구글 북 프로젝트의 문화콘텐츠 주권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진 않았을까?

'구글 북 프로젝트는 도서관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시도한 국내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성원(2011)의 글이 그것인데, 이 글은 한국의 디지털경험에 근거한 비교적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선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저자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는 변화되었지만 정작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솔직한 자기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도서관계와 관련된 우려의 극단에는 구글도서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정보자원에의 접근은 놀랄 만큼 향상될 것이지만 기존의 물리적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와 같이 바겐세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구글도서검색이 지식정보사회의 도서관에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지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김성원, 2011: 403)라고 말하면서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도서관 학계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글 북 프로젝트가 보편적 흐름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주의를 요하는 새로운 현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글은 도서관계의 입장에 국한되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연구범위에 있어서 그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 글은 유용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 외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화 프로젝트"(김성원, 2011: 408)라는 지점을 포착한 것이 그것이다. "정보와 수집, 보존, 유통을 담당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도서관"이 디지털환경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과 함께 "도서관계가 지속적으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담은 자료를 우선하여 노출시킬 가능성에 대한 감시의 기능"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디지털화시킨 소장자료에 대한 권리확보"(김성원, 2011: 414)까지 요구사항의 하나로 소략하나마 언급하고 있어 디지털 문화예술콘텐츠 주권 측면에서도 충분히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식의 콘텐츠 중심주의 대신 한국적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향유 양상 변화에 근거하여 구글 북 프로젝트를 도서관 위상 및 역할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성원(2011)의 연구는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의 연구 지형 내에서 거의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내 연구들은 아쉽게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제적 대응방안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와 전망 목표를 제시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구글 북 프로젝트가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미국이라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미국 혹은 타 국가들과 한국 간의 지리적, 정치적 거리를 그 변화의 파고에 대한 안전판으로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동시에 구글 북 프로젝트라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선언적으로 여겨질 뿐 그것의 정확한 실체가 현실화되지 않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은 '미래적'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mp3를 위시한 디지털 음악 및 소셜 미디어 시대로 각각 진입하여 극심한 산업 재편의 몸살을 겪고 있는 음악 산업과 언론 산업이 그러했듯이, IT 기술이 관련된 '문화 산업의 변동'은 그 미래적 사안이 '현실'이 된 시점은 그 실체가 이미 현실화되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장하자면, '미래의' 혹은 '해외의' 혹은 '일개 기업의' 구글 북 프로젝트라는 국내의 다소 안이한 인식 때문에 정작 그에 대한 대응 주문과 그 방법의 고민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구글 북 프로젝트를 다루는 국내의 연구들은 한국의 경험과 연결시켜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한지영(2007)의 연구를 예로 들자면, 그는 구글 북 프로젝트의 저작권 침해적 요소를 조사하고 공정이용법리로 분석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 디지털시대에 대응하는 출판업계의 동향은 구글이 도서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한지영, 2007: 162).

물론 저자의 말처럼 출판업계의 동향은 디지털시대에 구글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행보와는 별도로 나름의 전략과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 구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나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법일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많은 관련 국내 논문들은 구글의 행보에 대해 대체로 허탈하다 싶을 만큼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적인 대처방안은 그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빈약하다. 나아가 국내에서 지적된 구글 북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은 한국은 물론 국제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경험과 융화되지 못하고 원론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작 국가적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응방향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대부분은 법학과 도서관학 쪽에 치우쳐 있고, 특히 문화예술계의 시각을 반영한 접근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향후 문화예술 작품의 디지털화에 관한 문화예술계 스스로의 원칙과 그 대응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구글 북 프로젝트가 왜 해외의 사안만이 아니라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며,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문제가 되는지를 나아가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디지털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입장이 시급히 요청되는가를 논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공공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글 북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들이 현실 속에서 향후 공공 문화예술 디지털화에 있어 정확히 어떤 쟁점과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Ⅲ. 구글 북 프로젝트에 관한 쟁점과 그 함의

구글 북 프로젝트 논란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의 순환구조상 중개자로서의 구글의 역할과 속성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본 장에서는 우선 디지털콘텐츠라는 것의 사회적 위상을 다시 점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개자로서 구글이 등장한 상황은 문화예술이 디지털로 편입해가는 과도기이므로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개자로서의 구글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각 자체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기존의 디지털화 경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들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접근법일 것이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음악산업은 한국사회가 디지털로의 전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문화예술 분야 중 하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음악산업이 디지털위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도서 및 다른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음악으로 개편되기 이전, 음악을 감상하는 주된 매체는 mp3파일과 같은 음원이 아니라 앨범형식의 CD 음반이었다. 그런데 디지털음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디지털음원을 단지 음반의 '보조물'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일부 낙관적인 사람들은 mp3가 실물음반판매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CD를 기반으로 한 음악감상 대신 디지털음원과 온라인 스트리밍 감상 방식이 음악 산업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기존의 음반 중심의 음악 콘텐츠 향유 구조는 사실상 붕괴하였다.

음악 산업에서의 시행착오는 거의 교정되지 않고 도서 출판 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 도서관의 책들이 디지털화 되어지고 디지털 형태의 책들이 증가한다해도 도서관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지, 인쇄 형태의 장서 수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쇄형태로 출판되는 책들이 디지털화 형태의 책을 위한 대치용으로 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이향국, 2005: 78).

놀랍게도 위의 글은 디지털 북의 증가가 인쇄도서를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한 국내 대학 도서관에서는 인쇄도서 이용자 감소로 인해 서고를 축소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말이다.[17] 기존 실물 매체와 그 문화향유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존속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은 음악 및 출판 산업 외에도, 디지털 기술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 미술관 나아가 문화기관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을 통한 디지털환경으로의 급속한 이전 자체가 문화예술분야에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문 출판 산업을 포함한 뉴스분야 또한 디지털 시대에 대한 안이한 낙관론의 대가를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인 레스 힌튼(Les Hinton)은 월 스트리트 저널 발행인이던 시절 구글을 뉴스 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업계의 피를 빨아먹는 디지털 흡혈귀에 비유하며 구글 측에 콘텐츠를 공짜로 준 것은 큰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에게 콘텐츠를 공짜로 주지 않고 다른 방식을 택했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였다.[18]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들이 뉴스를 기존 언론사들 보다 포털 등 디지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주로 얻기 시작하면서 언론사들의 뉴스 판매 및 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문화예술 및 지식 콘텐츠의 수익구조가 디지털 문화콘텐츠 중개업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징후 중 하나이다.

그리고 구글 북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문화향유 구조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때 디지털 문화향유 구조 변동 속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가치 혼란과 이에 따른 정당한 가치산정의 기준이라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 음악생산에

---

17)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공간 중 일부공간에 대한 공사안내공지에서 "인쇄자료 이용 감소에 따라 서고 공간을 줄이는" 대신 기존의 서고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ibrary.yonsei.ac.kr/board/view.do?menuCode=001401&manageIdx=1&boardIdx=7999&go=&group=&gogroup=&searchField=&searchWord=&searchCategory=, 이는 해외 유수 명문 대학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인쇄자료 이용 감소가 반드시 디지털자료의 증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디지털자료에 대한 수요증가가 분명한 만큼 인쇄자료가 디지털자료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8) 'WSJ publisher calls Google 'digital vampire'', crainsnewyork, June 24,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사하는 측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정액 음원서비스의 가격 책정이 음원의 가격을 지나치게 저평가하였으며 그 수익 분배에 있어서도 통신업체 및 인터넷 포털 등의 중개업체의 몫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기존 CD 등의 실물 음악 매체 시대에 통용되던 음악 콘텐츠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공유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음악이 무료 콘텐츠로 전락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음원의 시장 가치와 그 분배 비율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 할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가치산정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이러한 분쟁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치산정에 대한 원칙과 경험을 제대로 갖지 못한 공공 문화예술 기관 및 관련 주체가 그 경험을 선점하는 중개자들이 주도하는 디지털화 흐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가치산정시스템에 속할 것을 강요당한다면 이는 사적 분쟁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공익 차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구글 북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의들은 바로 그 '가치 매김'의 기준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원칙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공론장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구글이 국내 도서 및 미술작품 나아가 다른 문화예술 유산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비공개된 자신들의 기준을 갖고 특정한 가치 평가를 문화기관과 시장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제시했을 때, 우리는 어떤 원칙과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비용'을 해당 디지털화 과정에 책정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3장에서는 거시적인 공공 문화콘텐츠의 향유구조의 측면에서 주목해야할 구글 북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들을 그 시사점과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구글을 상대로 제기되었던 법적 소송과 훗날 발표된 화해안에 반대하여 법원에 이의제기 형태로 제출된 성명서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법적 분쟁의 공론장 내에서 돌출된 비판이나 의견들이 구글 북 프로젝트의 미래 진행방향 나아가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구조 변동에서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 독점가능성과 옵트아웃 정책 그리고 디지털 문화콘텐츠 가치 산정

구글 북 프로젝트에 관한 법정 소송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성명서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구글의 독점가능성이다. 특정 국가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권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독점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향유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IT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Amazon), 거대 통신사인 AT & T 등 구글과 여러 사업 부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이번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Google Library Project) 화해안에 대한 이의제기(objection)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화해안의 내용 중 그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구글의 시장 '독점 가능성'을 꼽았다. 이러한 독점 요소에 대해 이들 경쟁 업체들뿐만 아니라 학계 및 미국 등의 각국 정부 그리고 국제 문화 관련 기구들에서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에 제출한 이의제기 성명서를 통해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화해안이 검색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위치를 유지/강화시키기 때문에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화해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검색광고 시장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글과 경쟁하는 업체들의 검색 플랫폼은 그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비(非)경쟁적 요소로 인한 구글의 시장 독점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와 그 화해안을 통해 구글이 구축하게 될 디지털 도서 자료와 관련 부가 데이터의 양적 규모는 사용자의 검색경험과 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데, 현재의 화해안이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어떤 다른 친(親)경쟁적인 조치로도 구글의 독점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화해안을 허용하는 것은 구글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구글 또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긴 했다. 구글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 화해안은 스캔된 디지털 도서 정보의 제 3자 이용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구글은 제 3자의 디지털 도서 관련 검색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독점 이미지의 희석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의 독점적 위치는 여전하다며 반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 화해안은 어떤 업체가 스니펫(snippet, 발췌 정보)을 디스플레이할지, 어떤 스니펫을 제공 받을지를 구글이 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구글이 스캔한 도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수정된 화해안이 제 3자가 스캔된 도서를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글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비상업적' 항목에 대해서만 제 3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글의 배타적인 시장 독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경쟁 업체들은 구글이 허락하지 않는 한 구글 북 프로젝트가 스캔한 도서들을 크롤링(crawling, 특정 정보를 색인화하기 위해 검색 저장하는 것), 색인화(indexing) 및 디스플레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Microsoft 외, 2010: 16).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설사 이러한 제 3자 활용을 구글이 허용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경쟁사들이 구글에 종속(검색 트래픽이 결국 구글에 집중됨으로써)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 비판했다(Microsoft 외, 2010: 24).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구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아마존 역시 구글의 독점 가능성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이유로 구글의 독점 가능성을 경계했다. 아마존은 화해안에 반대하는 성명서에서 "화해안으로 인해 구글은 고아저작물 및 다른 작품에 대한 전자적 복제품을 독점적으로 배급하는 주체가 될 것이며, 이는 미래에 가능한 경쟁을 억압할 것"이라면서,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cartel, 독점을 위한 연합)을 화해안 이해당사자들이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제 3자가 스캔된 도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구글의 독점이 아니다"라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구글 독점"이라며 일축했다. 아마존은 스캔된 도서에 대한 이용 접근권을 (구글로부터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서비스 및 관련 업체들을 일컫는 리셀러(Reseller, 재판매자) 조항을 예로 들며 "리셀러 조항은 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며 오히려 리셀러들을 구글의 허약한 하위 배급자로 종속시킬 뿐이다. 오로지 구글만이 디지털 스캔 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리셀러인) 아마존 등은 (해당 도서 정보를 원하는 자신들의) 고객들을 구글에 보낼(연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Amazon.com 외, 2010: 20)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구글의 독점은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는 화해안 찬성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화해안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 혜택에 필수적이라고 가정된 것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 반경쟁적이며 부적절하다"(Amazon.com 외, 2010: 13) 구글의 북 프로젝트는 저작권법 및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는 아마존은 구글의 북 프로젝트가 (이제껏)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구글의 경쟁자들이 비(非)혁신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구글이 제시하는 (구글 북 프로젝트) 사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Amazon.com 외, 2010: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 장이 이러한 비판들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지점은 이러한 독점 가능성이 공공 영역의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 향유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특히 디지털 문화예술 향유 구조의 창작자, 문화기관 및 소비자들이 받는 독점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글이 불법행위라는 비난들에도 불구하고 스캔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을 비롯한 비상업 도서들에 대한 디지털화 논란을 들여다보자.

구글의 독점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구글이 화해안에서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정책 때문이다. 이 옵트아웃 정책의 채택이라는 구글의 기상천외한 행보를 일컬어 혹자는 "구글이 (이번 화해안으로 인터넷 자체를 걸고) 도박을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즉 구글은 사실상 위법 소지가 다분한 이 정책을 통해 전 세계의 도서를 디지털화하고 그에 대한 접근권을 자신들이 갖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대량으로, 일괄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구글의 시도는, 단지 자본력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한 기업이 가진 '전 세계 단일의 디지털 도서관 건립'과 이를 통한 '자유로운 지식 이용'이라는 이상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

구글의 옵트아웃 정책은 구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지배력을 극단적으로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고아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이 확보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글이 제시한 옵트아웃 방침이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고아저작물로 분류될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구글이 자동적으로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들 및 프랑스, 미국 정부 등이 우려를 표명하였다(Richter 외, 2009; Cavanaugh 외, 2009). 구글이 고아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독점하게 된다면, 구글이 콘텐츠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 독점과 함께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Samuelson, 2010: 18-19).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독점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독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구글의 저작인격권 침해 위험과 결부되어 더욱 증폭된다.

미국정부는 이번 사안이 반독점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구글과 같은 옵트 아웃 정책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임을 확인했다. 미국정부는 성명서에서 "구글의 경쟁자들은 (화해안을 통해 구글이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글과 같은 서비스를 하기 원하는) 경쟁자들은 결국 구글과 달리 수백만 명의 개별 저자와 교섭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것"(Cavanaugh 외, 2009: 23-24)이라고 하였다. 애초에 전 세계 저자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구글은 옵트아웃이라는 정반대의 (그리고 불법에 가까운) 전략을 통해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

구글의 옵트아웃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이밍이다. 적어도 문화예술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옵트아웃은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장에 대한 하나의 선전포고였다. 화해안이 발표되던 2008년, 여전히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공공 문화콘텐츠의 디지털적 가치는 모호했고, 그 가치에 대한 논의는 미숙했다. 그 틈새를 구글이 파고든 것이다.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무주공산과 같은 지대에 구글은 깃발을 꽂으려 했다. 구글이 처음 디지털도서에 시장가격을 설정한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디지털도서가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해안에서 구글은 책 한 권당 60달러를 디지털화에 대한 보상으로 (화해안에 명시된 원고 집단의 자격을 가진) 작가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왜 애초에 한 푼도 지불하려 하지 않았던 서적들에 대해 한 권 당 6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달러를 지불해가면서까지 구글 북 프로젝트를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하려하는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디지털화된 공공 영역의 서적들이 가지게 될 가치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그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구글은 화해안을 통해 자신들의 가격정책을 강행했다. 디지털화된 공공 영역의 서적에 대한 가치를 매긴 것도 구글이 처음이었고, 디지털 도서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인 논의의 장 또한 결국 구글이 만든 것이다. 물론 이 논의의 장을 통해 작가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구글이 일방적으로 정한 60달러라는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19]

이러한 구글의 '깃발꽂기'식 행보는 그 의도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영역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그것은 가치가 주장되거나 인식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는 언제라도 제 3자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이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디지털 콘텐츠로서도 가치를 가지려면 단순한 디지털화로만은 부족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오히려 한국의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 3자가 독점적 위치나 기술적 우위를 통해 그것을 상업화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산정을 사회적 공감대 없이 시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세계적인 미술 문화유산인 '모나리자'를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20] 한국의 경우,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논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논할 시점은 언제이어야 할까? 구글, 혹은 구글에 준하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사업자가 이미 독점적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에, 한국적 시각을 '그들의' 시스템이나 가치 기준에 반영할 여지는 있을까? 때문에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가치정립이라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당면 과제이고, 구글 북 프로젝트 논란이나 그 화해안의 범위가 영·미 문화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아직 갈 길은 너무도 멀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구글 북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를 바라보는 콘텐츠 중심주의는 이러한 가치선정의 싸움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적절하고 정당한 가치가 산정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다. 디지털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수로의 설치유무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문화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도되는 대응의 노력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화는 '디지털화되기만 하면 누가 해도 좋다'식으로 이루어져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하여 디지털화 주체, 디지털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구글 법정

---

19) 중국의 작가 천춘(陳村)은 "60달러로 우리를 달래려 하다니 구글은 꿈 깨야 한다"며 구글의 화해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흥, 겨우 60달러로? 구글 꿈깨!", 헤럴드경제, 2010년 3월 29일)
유사한 경우로, 미국의 작가협회도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책 한 권 당 구글이 애초에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75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책 1권에 750달러 배상해야' 구글에 요구', 연합뉴스, 2012년 8월 4일)

20) 'Mona Lisa doesn't need Google Art Project' (Los Angeles Times, April 9, 2012)
http://latimesblogs.latimes.com/culturemonster/2012/04/mona-lisa-google.html
세계적으로 모나리자를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대중들이 많기 때문에 루브르박물관이 구글측에 모나리자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대중들도 많다. 그러나 무작정 불만을 갖기 전에 그 이면에 있는 국가문화유산의 가치산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한편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은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에 협력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분쟁은 보여주고 있다.

2. 공공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과정에 요구되는 투명성

디지털 공공 문화예술 콘텐츠 정책 관점에서 구글 북 프로젝트와 관련 소송 논쟁에서 짚어봐야 할 두 번째 쟁점은 투명성에 대한 것이다. 구글 북 프로젝트 및 관련 화해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투명성 비판 논리의 상당부분은 구글 북 프로젝트의 공공성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글로 대표되는 민간 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이 구글 북 프로젝트 및 구글 아트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 문화 향유 순환 구조에서 기존의 문화 기관들이 담당해오던 공공 문화 정보 및 가치의 보존 및 보급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면 이러한 투명성 문제는 특정 시장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및 문화권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구글 북 프로젝트 및 화해안에 대한 투명성 비판은 대상 도서의 스캔에서 그 디지털 자료의 분류/처리에 이르는 디지털화 과정 그리고 디지털 자료의 가격결정 원리에 이르기까지 구글 북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화해안의 내용대로 구글 북 프로젝트가 시행되게 될 때 시장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구글은 해당 디지털 자료의 검색 권한 및 이용에 대한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가격결정 과정을 감시하거나 적절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투명성 부족 문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마존은 이의제기 성명서를 통해 구글 북 프로젝트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비판하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구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도서 권리 등록소(Book Rights Registry, 구글 북 프로젝트에서 저작물관련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고아저작물의 저작자를 찾는 일 및 구글 북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일 등을 담당한다)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마존은 이와 관련, “화해안에 따르면 구글이 단독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감사(監査)는 오로지 독점적(카르텔적) 가격정책에서 이득을 보는 이해당사자들로 이루어진 등록 심사 위원회만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Amazon.com 외, 2010: 16) 즉 이들 도서 권리 등록소 스스로가 (구글 북 프로젝트의) 상품가격이 상승할 때 이득을 보게 되는 이해 관계자로서 구글이 임의로 (이익을 위해) 가격을 고정하거나 조정할 경우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또한 미국 법원에 제출한 이의 제기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구글 북 프로젝트의 가격결정 구조 폐쇄성을 지적하였다.

> 구글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가격결정 권한을 통해 확보하게 될 시장 지배력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가격결정 알고리즘이라는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구글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구글에 최선이 되는 이익을 지향할 것이고, 구글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가격정책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도서 권리 등록소가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감시하거나 검증한다 하더라도,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핵심 방법론은 비공개이며 오로지 구글만 알고 있을 뿐이다(Richter 외, 2009: 19).

문제는 공공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해 형성될 디지털 문화 콘텐츠 향유 순환 구조에서, 구글이 행사하게 될 구글 친화적 가격정책이 곧 소비자들과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 문화/예술 특히 구글 북 프로젝트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지식 유산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시장 논리 이전에 따라야할 공공 원리(접근권, 지속성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있으며, 이는 설사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지식/문화/예술 콘텐츠 장(場)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구글 등의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기술/인력 및 관련 서버 등의 기반시설 비용의 책정은 이른바 기업 영업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영업 비밀에 근거해 책정된 디지털 정보의 검색 및 이용 가격은 이들 기업 당사자들의 협조 없이는 그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타당성 검증이 경쟁 업체들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구글 북 프로젝트에서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즉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공공 문화 디지털 정보의 검색 및 이용 가격을 구글이 임의로 높게 책정할 때 시장 나아가 공공 부문이 이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 부문(대학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공공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여 그 이익을 얻는 구글로서는 해당 가격결정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구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직접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도 그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도서관과 박물관과 같은 기존의 문화 기관들에서는 사서와 큐레이터와 같은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일종의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공개된 기준,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검증될 수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문화 기관의 소장 자료를 분류,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나 연관 자료들(meta-data, 메타 데이터)을 쌓아왔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 향유 순환 구조에서 이들 문화 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중개자로서의 구글은 기업 비밀 혹은 기술적 원리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바이디야나단은

> 구글은 북 검색 엔진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될 지에 대해 공론화 하지 않았다. 구글과는 반대로, 사서들이나 도서관들은 개방돼있는 공공 기준을 가지고 메타 데이터나 조직을 운영한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인 메타 데이터는 특히 중요하다. 주제목이나 키워드, 그리고 품질 지표 같은 메타 데이터가 파일 안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나치 대학살에 대한 책을 검색할 때, 나치 대학살을 연구한 서적만큼이나 이를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서적들을 뽑아낼 것이다. 훌륭한 메타 데이터 기준은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생성한다. 수준이 떨어지는 메타 데이터는 말도 안 되거나 오도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색인 기능을 공공 대학도서관에서 사기업으로 넘겼을 때 훌륭하고 개방된 메타 데이터 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데 대해 아직까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바이디야나단, 2012: 246).

이라고 주장했다. 즉 공개되지 않은 정보 처리 기준과 과정은, 결국 공공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보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폐쇄적인 메타 데이터 자료 처리 기준은 특정 사회나 국가 혹은 문화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검증 과정 대신, 오히려 해당 문화권의 보편타당한 원칙을 해치는 해석이나 연관 자료를 제공할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언론의 기회 보장 또한 중요하지만, 공공 문화예술 및 지식 정보의 디지털화는 문화적 고유성과 자주성의 측면과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검열'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전제조건으로서 그 투명성 요구를 수반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공공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와 지속가능성 문제

공공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디지털화를 통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다. 디지털 파일 혹은 디지털 서비스는 그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어디든 저장할 수 있고 어디서든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존 문화/예술 유산과 달리 영원불멸의 '정보'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들 디지털 파일의 '옷'을 입은 문화/예술 유산 및 이들이 머물게 될 디지털 공간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디지털화 프로젝트 정책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그 중요성이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 또한 여러 의미의 유실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보의 이용이나 관련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미술 작품을 고화질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스캔, 저장했다 할지라도, 작가 이름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해당 미술 작품에 사용된 재료나 해당 이미지의 촬영 당시 정보(광노출도, 습도 등) 혹은 복제품의 존재 여부 등의 부가정보가 제대로 분류, 보존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미지 파일은 이미 기존 미술 작품으로서의 '특정 자격' 일부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리 부실로 인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자체의 훼손이나 관련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 또한 당연히 해당 미술 작품 디지털 정보의 지속적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때문에, 미래 세대들에 대한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문화 프로젝트들의 경우, 그 지속 가능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유럽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 계획의 평가와 지향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시한 보고서 'New Renaissance'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 디지털 오브젝트(Object)는 오직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만 기능하거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들 기술 환경이 (금융이나 법 혹은 기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면 디지털 자료들은 급격히 노화(age)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유실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중략 … 디지털 (자료의 장기적) 보존은 디지털화 이상으로 중요하며, 디지털 형태로 생성된 예술, 영화, 음악,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텍스트와 웹사이트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EC, 2011: 26).

(구글 측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 구글 북 프로젝트 또한 디지털화를 통해 공공 문화 및 지식 유산의 디지털 문화 향유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담보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구글 화해안이 겨냥하는 구글 북 프로젝트는 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과 (화해안에 찬성한) 작가 및 출판사들이 화해안의 합의 내용(구글 북 프로젝트 서비스)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화해안을 통해)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구글은 '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홍보되었던 화해안을 완벽하게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사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 미스테리한 구글의 권리는 화해안에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구글 북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 내용과 그 서비스에 대한) 종료권리에 대한 합의 내용은 원고와 구글 사이에 비밀이다'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Richter 외, 2009: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랑스 정부는 이어 "(구글과 원고 당사자) 양측은 사실상 화해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중 하나(자의적인 종료 권리)를 일반대중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법원 그리고 원고들이 대변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 구성원으로부터도 숨기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공성을 지향한다고 선전되었던 구글 북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이 사실상 구글의 ‘사적’인 권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또한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서 IFLA는 구글의 북 프로젝트에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콘텐츠에 대한 장기 보존 의무 관련 조약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 구글 화해안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구글은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그 비용이 이익을 상회하게 되는) 특정 미래에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을 처분하여 데이터의 양을 줄이려(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려)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있어 전체 데이터베이스 (보존 자체)가 중요하고 유용하므로 (법원이 통과시킬) 합의안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IFLA는 법원이 이 점을 고려하길 요청한다(IFLA, 2009).

위의 진술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구글의 특성은 결국 디지털화 된 공공 문화콘텐츠 및 문화유산이 지녀야 할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ew Renaissance' 보고서 또한

> 민간 부문 혹은 사기업에게 해당 디지털 자료 혹은 서비스의 상업적 가치가 없어진 다음에도 해당 디지털 자료 혹은 서비스의 장기 보존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EC, 2011: 28).

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구글과 같은 일부 인터넷 업체가 사실상 디지털 도서 검색 시장 나아가 디지털 문화/예술 및 지식 콘텐츠 시장 영역에서 그 독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다면, 이러한 위협은 시장 논리와 결부되어 더욱 큰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혹자는 먼 훗날 설사 구글이 사업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다시 해당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거나 해당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운영을 맡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은 미래 디지털 문화 향유 순환 구조 내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기존에 도서를 포함한 문화예술품 운영 시스템의 축 역할을 하던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들이 구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도서를 포함한 지식 문화유산의 경우 구글 북 프로젝트가 일반화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도서관들이 자신들의 실물 도서들을 매각하거나 실물 도서의 보존 상태가 악화될 때 그 종속 흐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실물 도서와 비교하여 디지털 도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 의존도가 높아지고, 도서관 또한 도서 등의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의 보존 및 보급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물리적 형태 대신 일부 대형 업체들의 디지털 파일 및 관련 서비스에 의존하게 될 때 구글 북 프로젝트의 폐쇄 여부는 그 재개 가능성과는 별도의 심각한 공공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뮤엘슨은 “구글 북 프로젝트 서비스 구독과 관련해 (도서관, 특히 자료의 자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어려운 영세 도서관들) 두려워해야 하는 점은 바로 구글 북 프로젝트에 익숙해진 (도서관 등의) 대형 기관들이 이후 몇 년 안에 자신들의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던 물리적 도서들을 처분해버리는 유혹에 굴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미 많은 대학 도서관들 사이에서 경제/정치적 가치가 더 뛰어난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부동산의 한 자리를 '물리적 도서'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디지털 도서 및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물리적 도서의 처분이나 폐기를 더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사뮤엘슨, 2010: 20). 이어 그는 물리적 도서를 매각 혹은 처분한 이후 도서관들은 (구글 북 프로젝트) 구독 서비스 가격 정책에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구글이 2004년 구글 북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도서산업 및 도서관 등의 공공 기관의 디지털정책에 있어 부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바이디야나단은 구글 북 프로젝트가 공표된 이후 여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던 문화 기관들이 문화예술 유산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들 기관이 구글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노력과 그 결과물을 공공 부문의 보완재 영역 위치한 것으로 인식하는 대신 사실상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들 문화 기관들은 자체 디지털화 노력을 위해 경주(傾注)하기보다는, 구글의 문화유산 디지털화의 과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다. 바이디야나단(2012)은 구글 북 프로젝트의 파급력이 많은 유관 기관들의 디지털화 노력을 어떻게 좌절시켰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구글 북스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초기에 미국 각 대학 출판사들의 대표자들은 이미 그들 또한 도서관에 전자책 및 전자 색인을 공급하려고 했었다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10여년 이상 수많은 대학 출판사들은 백 카탈로그와 절판된 책들을 전자 파일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수요가 너무 적은 책들을 '주문 인쇄'하기 위해서였다. 재단들의 지원으로 대학 출판사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파일들의 형태나 목록을 표준화해 구독료를 받고 도서관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 또한 비영리 목적의 벤처기업인 오픈 콘텐트 얼라이언스가 소수 대학 도서관들의 소장 도서들을 스캔하는 데 도움을 줘왔다.
>
> 하지만 2004년 구글이 그들의 야망을 능가하는 자금력을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구글은 너무 컸고, 또 빨랐으며 소규모 계획들을 몰아냈다. 구글 북스를 통해 책이 다운로드될 때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금액을 효과적으로 책정한 합의 이후 구글은 혼자 남게 됐고,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수많은 대학 출판사들이나 도서관들은 엇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잠정 중단했다.(바이디야나단, 2012: 255)

즉 구글의 디지털 사업 참여와 그 독점적 위치는 다른 영세한 문화예술 기관 및 업체들의 디지털화 계획들을 사실상 시장 밖으로 몰아내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먼 훗날 구글이 구글 북 프로젝트의 서비스 중단이나 폐쇄를 결정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나 선택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기업의 경영적 판단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공 문화/예술 유산의 보존과 보급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은 해당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매우 불투명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구글을 위시한 사기업들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여부는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 보존 및 보급이라는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다. 동시에, 정부나 예술 위원회 등의 정부 산하 공공 부문 등이 공공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주체적으로 이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민간 주도의 문화유산 디지털화 과정: 시장 원리와 공공 가치의 충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제출된 문화유산 디지털화에 관한 자문 보고서 'New Renaissance'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공공 문화 기관들이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부문과 파트너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파트너쉽을 (무조건) 장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파트너쉽이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체결되고 어떻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민간 부문에 문화유산의 스캔 권한을 주고 대신 스캔된 자료 및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단순한 ‘주고 받기’ 식으로 디지털화 파트너쉽을 인식해서는 공공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간 부문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급이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 부문이 디지털화 파트너쉽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글 북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관련 소송을 통해 불거져 나온 문화예술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 파트너’로서의 구글의 입장과 그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공공 문화예술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미래 민간 파트너쉽에 있어, 민간 부문의 ‘우선 순위’가 실제로 공공 부문의 ‘임무’와 ‘가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구글 북 프로젝트 및 아트 프로젝트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바로 구글이 국내 공공 문화예술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파트너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라도,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를 대하는 기준과 원칙이 드러난 구글 북 프로젝트 소송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구글 북 프로젝트, 나아가 구글의 문화예술 및 지식 유산 관련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상업적 관점에서 넓게 보면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 및 관련 광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1] 때문에 지금까지 구글이 검색 시장에 적용해오던 검색 관련 기술 및 원칙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들을 통해 앞으로 구글 북 프로젝트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짐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이디야나단(2012)는 구글의 검색엔진 운영 시스템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립적’이지 않으며 수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자신들의 이윤달성을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검색 엔진 운영 시스템의 기본인 검색결과 노출에 있어 구글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많은 대중들이 사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킨다’이다. 바이디야나단은 이에 대해

> "구글은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실제로 유통되는 자료보다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표'를 던진, 가장 흥미로운 자료에 호의를 보이게끔 설계된 것이 사실이다“(바이디야나단, 2012: 124)

21) 구글이 자체 회계 정보를 공개한 inverstor.google.com에 따르면, 구글의 2011 회계연도 광고 매출은 365억 3,100만 달러였는데, 이는 구글 총 매출 379억 500만 달러의 거의 96%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를 근거로 구글이 인터넷 검색 업체이라기 보다는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광고 업체라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Jon M. Garon 등)도 상당수 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고 말한다. 또 그는 구글이 검색결과에 공공연하게 개입한다며, 바이디야나단은 "종종 구글은 특정 맥락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면, 목록이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편집하는 대신, 시스템 전반에 대대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바꾼다."(바이디야나단, 2012: 108) 라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 결과가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검색 결과에 대한 자의적 개입이 없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디야나단은 구글검색엔진의 자의적 운영의 예로 종종 인종 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 '유대인(Jewish 혹은 Jew)'에 대한 검색 결과의 인위적 개입 사례를 꼽는다. 그에 의하면, 2004월 4일 구글 검색 창에서 'Jew'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첫 번째 결과로 쥬워치(Jew Watch)라 불리는 반유대교 사이트 홈페이지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가치중립적이라 알려져 있는) 위키피디아(Wikipedia) 홈페이지보다 더 상위에 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즉 유대인에 대한 '인종 차별' 시각이 유대인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혹은 유대인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보다 검색 상위에 위치하게 된, 일반 대중들이 형성하고 있던 상식 수준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구글은 이 인종 차별 논란을 이른바 '컴퓨터 알고리즘'의 수정을 통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결했는데, 이에 대해 바이디야나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3여년에 걸친 'Jew'검색 결과 논쟁이 끝났을 때, 구글은 '검색 결과에 대한 입장' 페이지를 조용히 바꿨다. 과거 (페이지에 있었던) "구글에서의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각 사이트들의 순위는 수천여 개 요인들을 고려해 검색어와 페이지의 관련성을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라는 표현은 2007년 5월(을 기해) "구글에서의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각 사이트들의 순위는 수천여 개 요인들을 고려해 검색어와 페이지의 관련성을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됩니다."로 바뀌었다. 즉 '자동적'이라는 단어를 뺀 것인데, 반인종주의 연맹과의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이 단어 때문이었다."(밑줄 강조는 필자, 바이디야나단, 2012: 109)

이와 관련해 그는 주장하기를, 구글은 검색 결과로 의도치 않은 포르노그라피, 국제사기, (폭탄제조법 등과 같은) 범죄 관련 정보 등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이고 깔끔한 검색결과를 낸다는 인상을 주기위해 기술자들이 의도적으로 검색결과 순서 노출 알고리즘에 있어서 인위적인 개입을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엔 불법 저작권물을 자주 노출시키는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페이지의 상단에서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구글 측에서는 이를 저작권 보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시장 관계자들은 오히려 구글이 유튜브(YouTube), 구글 북 프로젝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관계 개선이 시급해진 영화사 및 방송사 등의 콘텐츠 저작권자들에게 화해의 제스쳐를 보인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22] 동시에 구글 스스로가 상당수의 저작권 콘텐츠를 각종 서비스를 통해 보유하게 되면서 이들 저작권 위반 페이지들을 용납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를 단속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대인(Jew)이라는 단어의 검색 결과가 反 유대주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것이나, 불법 콘텐츠 저작물의 노출을 반복하는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상단에서 제거하는 등의 조치는 이른바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구글의 이러한 '공익적 조치'가 언제든 같은 원칙과 잣대를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법 콘텐츠 저작

22) 'Under Copyright Pressure, Google to Alter Search Results', New York Times, August 10, 2012 http://mediadecoder.blogs.nytimes.com/2012/08/10/google-to-alter-search-results-to-reflect-a-sites-history-of-copyright-infringemen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물 신고가 반복되는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 노출에 대해 영화/방송 업계의 반발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으며, 심지어는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웹페이지가 검색결과 창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 이번 구글 조치에서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제외되었다. 이번 구글의 유튜브 예외조치는 결국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에 대한 특혜조치라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3] 반 유대주의 웹사이트의 검색 결과 조정에 3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구글의 이러한 '공익적' 판단이 사기업으로서 시장 이익을 우선한 '자의적' 해석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구글이 중심이 될 (가능한)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 순환 구조에 대응해야 할 문화 정책의 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판단은 결국 시장 이익을 약속하는 대중적 취향 혹은 포퓰리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결국 구글의 북 프로젝트는 특정 문화권의 고유한 문화예술 가치나 사회적 공감대가 특정 대중적 취향이나 포퓰리즘에 반할 경우, 그것을 고유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석이나 가치 산정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할 가치를 지닌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중개자로서의 구글은 문화예술의 전격적인 디지털로의 편입을 주도하며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주춤하며 대응할 시기를 놓치고 있는 사이를 틈타 디지털콘텐츠의 운용과 가치평가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들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프랑스 역사가인 장 노엘 자네(Jean-Noel Jeanneney)는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위해 구글과 같은 중개자에게 디지털 문화예술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자로 유명한 그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이던 2002~2007년 동안 "도서는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구글 북 프로젝트를 비판했다. 그는 구글이 웹상에서 문화콘텐츠를 취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문화콘텐츠에 있어 미국 중심적인 선별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구글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진 검색결과에서 나타난 가치전도 혹은 가치왜곡현상을 지적했다. 우선 그는 빅토 위고, 단체, 세르반테스, 괴테 같은 유럽의 문호들의 이름이 입력된 방식은 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비난했는데, 이들 이름표기에 있어 원어가 무시되고 영어식표기가 우선시 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 이 작품들에 대한 영어번역본이 원문보다 검색결과 먼저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2006년 예를 들어 구글 북서치의 스페인어 사이트에서 세르반테스를 입력하자 처음 등장한 작품 5개는 프랑스어였고, 그 뒤로 영어로 된 도서가 3개 따라나왔다. 그리고 9번째 및 마지막에 가서야 저자가 원래 쓴 언어로 쓰인 돈키호테에서 발췌한 모음집이 나왔다(Jeanneney, 2007: 11).

이러한 가치에 있어서의 전도현상은 구글이 혹은 구글과 같은 미래에 있을 강력한 인터넷업체가 중개자로서 특정 문화권에서 중요한 문화예술작품에 대해 그 가치를 '합당하게' 산정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공공성의 측면에서 위험한 발상임을 확인시켜준다.

Ⅳ. 결론: 디지털문화콘텐츠 가치산정에 대한 공론장의 필요성

23)Google's new search algorithms crack down on piracy, but YouTube is unscathed, http://www.siliconrepublic.com/new-media/item/28763-googles-new-search/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상에서 구글 북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적 소송과 연관된 논쟁의 내용들을 공공문화예술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독점, 투명성, 지속가능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가치 충돌이라는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글 북 프로젝트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구글 북 프로젝트는 국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향유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동 구조 내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 또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기존 문화예술 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적 가치산정의 원칙과 기준이 모두 구글이 제시한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구글 북 프로젝트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사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할 시급한 현안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용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편의성' 이라는 측면 외에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대외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 꾸준히 다른 문화권,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 디지털화 사업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들에 대해 공부하고 교류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기준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주장, 공유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고유의 가치는 그 미래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로 제 3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서 저평가되고 말 수 있다는 것을 구글 북 프로젝트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공문화예술의 보존과 보급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이다. 검색위주로 운영되는 구글의 시스템적 특성상 검색알고리즘 구성원리가 투명하지 않다면 이는 결국 해당 지역사회 내지는 해당 국가가 고유하게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 및 사회적 공감대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구글 북 프로젝트에서 제기되었던 비판 중 하나는 기존의 사서가 하던 일을 구글의 기술자 및 컴퓨터 논리가 담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지금까지 사서와 큐레이터를 비롯한 문화예술 전문 인력들은 도서관 등의 공공 문화기관에서 일하면서 공개된 기준에 입각해 지식을 확충하고 그것을 보존 및 전파하는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과정에 있어 투명한 기준이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글의 기술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검색결과와 관련 지식 서비스가 소비자를에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공공 이익의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기업으로서의 구글이 견지하는 도서검색알고리즘의 원칙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며, 그 원칙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그 원칙은 해당지역사람들의 공감대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 구글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혹은 국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공감대가 파괴된다면, 결국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류, 디지털화하고 메타 데이터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문화예술 유산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가 자본이나 기술력 등의 문제로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공감대를 담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디지털화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파트너쉽을 포함한) 해당 디지털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성의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로 전이된 문화예술콘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츠는 어쩌면 기존의 실물 문화예술 작품들보다 그 지속가능성의 면에서 더 취약할지도 모른다. 구글이 현재 아무리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결국 사기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손실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업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사업폐쇄가 구글 북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각 문화기관이나 국가 혹은 개인 이용자들이 입을 손해는 매우 클 것이다. 게다가 구글은 구글 북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폐쇄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문화예술의 디지털화에 참여하는 사기업들의 사업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의 보존과 보급은 전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이제까지 인류가 쌓아온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의 보존 노력에 매우 중대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구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반드시 그 지속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디지털문화콘텐츠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과 이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구글 북 프로젝트를 보는 국내 시각들에서도 드러나듯, 한국에서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및 그로인한 문화향유 구조 변동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구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는 구글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와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과 같은 거대 인터넷 업체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해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 전에 그 거대한 디지털화 흐름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불명으로 그 상업적 이용 가능성, 나아가 소비자 접근성이 가로막힌 고아저작물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한다. 고아저작물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디지털화를 포함한 구조적 개선과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EC의 디지털화 보고서 'New Renaissance' 또한 고아저작물의 해결이 관련 문화유산 디지털화 노력의 주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한 검증과 고민이 필요하다. 'New Renaissance'가 “디지털화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처럼,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목적’을 단지 ‘값싼’ 공공 영역의 문화유산을 쉽게 상업화하기위한 이유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상업적 이용이 어렵거나 저작자 불명이라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자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저작자 확인이라는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비용’이 문제되는 경제 논리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화해안에는 고아저작물 중 5년 안에 저작자가 나타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5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고아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글측이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 5년이 지나면 고아저작물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 등의 수익은 도서 권리 등록소의 운영경비로 쓰이거나 도서 권리 등록소에 등록된 작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Cavanaugh 외, 2009: 9). 이 항목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고아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더 이상 고아저작물의 저작자를 찾아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일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 구글 사업 반대론자들은 “구글이 도서 권리 등록소를 세워서 고아저작물의 저작자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찾는 노력을 적게 하면 할수록 구글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논리적으로 구글로 돌아가는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24)]

이 사안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아저작물에 대한 (구글) 등록저작물 디지털화 시스템의 착

24) 이러한 방침이 발생시키는 문제점 때문에 미국 정부 성명서는 미확인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체가 고아저작물을 찾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Cavanaugh 외, 2009: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취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심지어 구글화해안에 의하면 등록된 작가의 저서와 고아저작물이 경쟁할 경우 화해안은 고아저작물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책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구글에 등록된 작가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은 고아저작물이라 해보자. 이 때 구글은 고아저작물의 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구글에 등록된 저작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이의제기 성명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도서 권리 등록소를 통한 협상에 의해 출판사들은 (구글에) 등록된 저작권자의 작품과 고아저작물이 미래에 경쟁할 경우 고아저작물의 미래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도서 권리 등록소는 거대 상업 출판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등록된 저작권자는 고아저작물이 효과적인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유리한 방책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Cavanaugh 외, 2009: 22).

구글 측과 일부 경제학자, 법학자들 또한 구글 북 프로젝트 대상인 도서관들에 소장되어 있는 공공 영역 도서들은 물론 일부 저작물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고아저작물이고 현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현재 경제적 가치를 낮게 산정한 채, 구글이 디지털화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시장적 가치를 극대화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5]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포맷 상에서 가질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구글 북 프로젝트 혹은 다른 디지털 기술들이 기존 실물 문화유산의 시장 가치를 '증폭'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붕괴된 음악 시장에서 산정된 디지털 음원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사실상 음악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마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26], 고아저작물 등에 대한 구글 북 프로젝트의 '가치 매김' 또한 해당 도서 콘텐츠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는 창작 가치와 문화 사회적 가치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가치 반영이 반드시 화폐적 가치로 산정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콘텐츠가 수반하고 있던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이나 사회 공익적 가치 등은 해당 (상업) 디지털화 과정에서 합당히 치러야할 '비용'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듯 이제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디지털화되지 않은 콘텐츠'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문화유산=가치 있음, 디지털화되지 않은 문화유산=가치 없음' 이라는 이분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구글이 고아저작물을 취급하는 방식을 보면 디지털화 되었다고 해서 다 바로 어떤 정해진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이 가치를 높게 매기는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검색요청을 많이 하는 인기 많은 자료'이다. 구글의 화해안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고아저작물 디지털 콘텐츠는 5년이 지난 뒤 그 권리 자체가 폐기되어 권리자가 구글로 자동 변경되게 되어있다. 구글이 이러한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직까지 사회의 인식이 위의 이분법에 젖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 사이에 더 많은 의문부호와 고민들을 집어넣어야 한다. 디지털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이 중요하며, 무엇을 디지털화할지를 선별

25) 이런 입장은 디지털콘텐츠의 관점에서 디지털화되지 않은 문화예술작품의 가치를 0원으로 저평가하는 입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예를 들어 KEVIN KELLY은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구글은 도서들을 검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지 않았더라면 대중들에게 접근될 수 없었을 저자들의 책을 '구원'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디지털화되지 않은 작품을 상업적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저평가하였다('Scan This Book!', The New York Times, May 14, 2006).

26) 음악가들은 현재의 대중적 음원듣기방식인 스트리밍 정액제(일정액을 내고 무제한 듣기)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싼값에 책정되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Why] 대중음악계 "음악 정액제(일정액 내고 무제한 듣기) 폐지" 한목소리, 조선일보, 2012년 5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는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며, 어떤 문화예술작품이 디지털화되어 어떤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도출된 원칙들을 체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 구축의 필요성은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이제 민간 부분 혹은 사기업의 기술과 자본 참여 없이는, 공공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공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기업 협력체에게 문화/예술 유산의 디지털화 작업 및 그 이용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의 설정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시행주체별로 다양할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 및 여러 단체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예술의 디지털화에 있어서의 기준과 원칙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들의 원칙하에 실제로 유네스코 회원국이 추진하는 세계 디지털 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 및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로피아나(Europeana)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은 세계 속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의 고유문화가치를 드높일 수 있을 한국의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존재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공론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공론장에서 법학, 도서관학, 정보통신학, 사회학, 문화예술 등 최대한 다양한 분과들이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공론장에서 공공문화예술에 대한 디지털화의 조건들을 정교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조적 조건으로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 외에도 고민하다보면 더 많은 기준과 원칙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치산정 면에서 자료선별 기준의 적절성은 다른 구조적 조건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그 공론장에서 숱한 고민과 토론을 거듭해 도출된 한국 고유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한국은 국가적 수준에서 구글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중개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치산정의 원칙에 대응해야 하고, 나아가 한국의 문화예술콘텐츠 그리고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적 가치를 주장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Position on the Google Book Settlement, IFLA(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position-on-the-google-book-settlement), August 28, 2009.

Jeanneney, Jean-Noel (translated by Teresa Lavender Fagan), Google and the Myth of Universal Knowled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Parry, Ross, Recording the Museum: Digital Heritage and the Technologies of Change, Routledge, 2007.

Reyman, Jessica, The Rhetoric of Intellectual Property, Routledge, 2010.

Rimmer, Matthew, Digital Copyright and the Consumer Revolution, Edward Elgar, 2007.

Samuelson, Pamela, Google book search and the future of books in cyberspace, Minnesota Law Review, Forthcoming,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1535067,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535067), 2010

_____, Google Books is not a Library', Huffpost media(October 13,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European Commission, New Renaissance, Report of the 'Comite des Sages', 2011.

김기태, 구글 저작권 화해와 국내 출판계의 대응방안: 구글의 저작권 화해, 국내 저작물에도 해당되는가?, 대한출판문화협회, vol. 46 No. 9(통권 제 526호, 2009년 9월), pp. 8-11, 2009.
김병일, Google 도서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 디지털재산법연구 제 7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pp. 63-91, 2008.
김성원, 포털 도서검색서비스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구글도서검색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42권 제 1호, (2011. 3) pp.397-415, 2011.
김윤명, 구글 북서치와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의 법률문제. 정보관리연구. vol. 41, no. 2, pp. 133-159, 2010.
류병운, 글로벌 전자도서관의 구축: WTO TRIPs 협정 하에 구글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제언, 안암법학 36권, pp. 769-810, 2011.
박영규,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의 저작권법적 문제. Law and Technology, 제 4권 제 1호, 통권 제 16호(2008. 1), pp. 70-83, 2008.
박은주, Google Book Search'에 관한 고찰. Law and Technology, 제 4권 제 1호, 통권 제 16호, 2008년 1월호. pp. 100-112, 2008.
성윤아, 구글과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의 개요와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 1호(2009년 7월), pp. 71-98, 2009.
시바 바이디야나단, 황희창 역,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할 구글의 배신, 브레인스토어, 2012
안효질, 송선미, 프랑스 구글판결(TGI Paris, 2009. 12. 18판결)에 대한 평석, 계간 저작권, 2010 spring, 제 8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pp. 86-104, 2010.
유수현, 구글 도서검색과 디지털 도서관 실현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2010 spring, 제 8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pp. 38-55, 2010.
육소영, 고아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목적: 구글 도서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법학, 제 13집 제 1호, 통권 제 39호 (2011년 3월), pp. 373-398, 2011
이규호, 영국에 있어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에 대한 논의: 공정처리 여부를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 34집 제 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pp. 263-282, 2010.
이대희, 전자출판 및 디지털도서관 실현 방안, 계간 저작권, 2010 spring, 제 89호, 한국저작권위원회, pp. 4-25, 2010.
이영록, 구글북스 프로젝트와 미국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의 이용, Copyright Issue Report 제 8호(2009. 12. 18), 한국저작권위원회, pp. 98-104, 2009.
이향국, "구글 프린트" 프로젝트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한국도서관협회, vol. 46 No. 10(2005. 10), pp. 74-79, 2005.
정필주, 관람객의 문화향유양태 변화에 대처하는 박물관의 포지셔닝 전략, 제 1회 박물관,미술관 관련 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논문집, 한국박물관협회, pp. 45-85, 2010.
최진원, IT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구글북스를 중심으로, Copyright Issue Report 제 8호(2009. 12. 18), 한국저작권위원회, pp. 7-16, 2009.
한지영,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 , Law and Technology, 2007. 11. 제 3권 제 6호. 통권 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호. pp. 159-162, 2007.

*** 구글 vs. 작가길드 외(사건번호 05-cv-8136(DC)) 소송 관련 문건**

CHIN, DENNY, OPINION, March 22, 2011.

Authors Guild v. Google, 고소장 원문. 접수일 September 20, 2005.

Richter, Sheppard Mullin & Hampton LLP, Memorandum of Law in Opposition to the Settlement Proposal on Behalf of the **French Republic**, September 8, 2009.

CAVANAUGH, WILLIAM F. & PREET BHARARA, JOHN D. CLOPPER, STATEMENT OF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PROPOSED CLASS SETTLEMENT, September 18, 2009.

AMAZON.COM, INC. & IRELL & MANELLA LLP, OBJECTION OF AMAZON.COM,INC., TO PROPOSED AMENDED SETTLEMENT, January 27, 2010.

MICROSOFT CORPORATION & MONTGOMERY, McCRACKEN, WALKER & RHOADS, LLP, OBJECTIONS OF MICROSOFT CORPORATION TO PROPOSED AMENDED SETTLEMENT AND CERTIFICATION OF PROPOSED SETTLEMENT CLASS AND SUB-CLASSES, January 28, 2010.

***신문기사**

'구글 아트 프로젝트, 전세계 미술품 인터넷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2012년 4월 4일.

'구글 도서 검색 저작권 합의에 관한 중요 기한 연장', 연합뉴스, 2009년 4월 29일.

'미국 작가들, 구글에 책 1권당 750달러 배상 요구', YTN, 2012년 8월 4일.

"흥, 겨우 60달러로? 구글 꿈깨!", 헤럴드경제, 2010년 3월 29일.

'구글 북스 왜 좌절했나', zdnet, 2012년 7월 11일.

'대중음악계 "음악 정액제(일정액 내고 무제한 듣기) 폐지" 한목소리', 조선일보, 2012년 5월 26일.

'음원 유통업계 '배 불러~' 가수·제작자 '왜 불러~', 경향신문, 2008년 1월 21일.

'WSJ publisher calls Google 'digital vampire'', crain's new york business.com, June 24, 2009

'Under Copyright Pressure, Google to Alter Search Results', New York Times, August 10, 2012.

'Google's new search algorithms crack down on piracy, but YouTube is unscathed', silionrepublic, August 13, 2012.

'Mona Lisa doesn't need Google Art Project', Los Angeles Times, April 9, 2012.

'Under Copyright Pressure, Google to Alter Search Results', New York Times, August 10, 2012.

'Scan This Book!', The New York Times, May 14,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